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31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박용갑·한민수·조인철

박희승 · 복기왕 · 서미화

강유정 · 김영호 · 문대림

조승래 · 김영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 및 철도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 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이해관계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7조 및 제33조).

법률 제 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대통령 직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통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를 "상임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설치) ①항공·철도사고등	의 설치) ①		
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			
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항공·철	<u>대통령 직속의</u>		
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일반적인	② <u>대통령</u>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의 <u>위원은 상임으로 한다</u> .	<u>상임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u>		
	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	②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		
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u>촉한다.</u>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생 략)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철도종	②		

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u>국토교</u> 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 ②위원회는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 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 여 수당 또는 여비를 <u>지급할</u> 수 있다.

	<u>대통령</u>
<u> 령</u>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u>대통령령</u> -	
<u>지</u> 글	급하여야
한다.	